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0월 1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활동과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곤란한 수익사업이면서 공공성을 배재할 수 없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시설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경영성과 등의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안 제1장 총칙(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 안 제2장 임원 및 직원(임원,이사장,이사,감사,임원추천위원회,임원의 임기)
- 안 제3장 이사회(이사회,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회 참여제한)
- 안 제4장 사업(사업, 대행사업의 수행)
- 안 제5장 재무회계(사업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 안 제6장 감독(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안 제7장 보칙(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인의 비치)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장 3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에서는 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및 설립등기 사항

안 제2장에서는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항과 임원추천 위원회설치

안 제3장에서는 이사회 설치·운영

안 제4장에서는 시행사업

안 제5장에서는 회계처리 원칙, 매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작성

안 제6장에서는 감독사항, 보고 및 검사

안 제7장에서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공무원 파견, 인사평정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특수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은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서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 증진·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경상경비(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고정적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규칙적 반복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학아카데미, 돌문화체험관,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핑장, 구 대관령휴게소, 평창군 공설묘원 등 6개 시설이며 (영월군 10개시설, 정선군 25개시설)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2차 협의결과 적정통보가 10월 16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조례안의 내용적 검토와 관련하여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관광·체육시설 중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2. 장묘시설 등의 복지시설 중 군수가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안 제19조에서는 공단이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지 확인이 힘들며

운영하고자 했던 6개 시설(문화시설 2곳, 관광시설 3곳, 장묘시설 1곳)에는

없는 체육시설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는

조례제정시 조례내 사업범위 규정은 검토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규정하라 되어있으며  
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9조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의 제시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강원도 내 시설관리공단 조례제정 5개 시·군의 입법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며칠 전 10월 16일 강원도에서 평창군수(행정과장) 수신외  
“(가칭)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2차 협의결과 통보”를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관계 법령등을 준수하여 설립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서는

설립심의 단계 다음인 조례제정 단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시기·방법 등 협의를 거쳐 설명회를 개최
-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시도) 협의결과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 보고 및 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설명회가 완료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 운영근거인 본 조례의 구체적인 심사와 함께 6개시설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먼저 판단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안 제4장제19조제1항 각호를 삭제하고 수확아카데미아 관리·운영/ 평창자연휴양림 관리·운영/ 계방산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대관령휴게소 관리·운영/ 평창군공설묘원 관리·운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을 각 6개호로 신설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의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4에 따른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원의 복무 등 공단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 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 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단, 더 이상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게 공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2. 본인의 공단 대표권 제한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심의할 경우

## 제4장 사업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학 아카데미아 관리·운영
2. 평창자연휴양림 관리·운영
3. 계방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4. 대관령휴게소 관리·운영
5. 평창군 공설묘원 관리·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제20조(대행사업의 수행)**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 ①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장 감독

**제25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0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평창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1억원으로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군수가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둔다.